

인쇄 : 윤재구 / 자동차정책과 (2015-01-13 17:05:1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 토 교 통 부



수신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 질의 회신 (말소등록 관련)

1. 렌터카연 15-0004(2014.01.07)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 부에 "자동차 말소등록"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개정(2014.12.31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시행일 전에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가 관련 규정 시행 후 차령초과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제출 여부?

나. 답변내용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63호, 2014.12.31)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한 때에도 폐차인수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동차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



주무관

윤재구

기술서기관

김용욱

과장

전결 2015. 1. 13.

김희수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276

(2015. 1. 13.)

접수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8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43

팩스번호 044-201-5584

/ ku777@molit.go.kr

/ 대국민 공개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3.0으로 열어갑니다.

문서관리카드자동차정책과-276 1/1